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505 관련

제안년월일 : 2019년 9월 5일
제 안 자 : 운 영 위 원 장

1. 수정이유

○ 조례 제명을 보다 함축적이고 알기 쉽게 조정하고 이에 맞춰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, 편집위원회의 적용범위와 기능, 회의 운영 등에 관해 법적통일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용어 정의, 준용규정의 신설 및 그 밖에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 등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○ 제명을 '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'으로 변경함.

○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(안 제2조).

○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함(안 제5조).

○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함(안 제11조).

○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체계자구를 정비함(안 제3조~제10조).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○ 기타사항 : 신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”으로 한다.

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안 제9조를 삭제하고,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서울의회”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의정활동 소개,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소식지를 말한다.
2. “영상홍보물”이란 의회 영상광고, 전광판용 영상물 및 그 밖에 홍보영상을 말한다.

안 제3조(종전의 제2조) 중 “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작하는”을 “의회가 제작·배포하는”으로, “서울특별시의회편집위원회”를 “의회 편집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4조(종전의 제3조)제2호 중 “게재”를 “서울의회 게재”로, “편집시

안 심의”를 “편집시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심의”를 “제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에 위원장이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안 제5조(종전의 제4조)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6명”을 “의원 중에서 6명 이내”로, “전문인 4명을”을 “전문가 4명 이내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문인”을 “전문가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.

안 제6조(종전의 제5조)제1항 후단 중 “다만”을 “다만,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(종전의 제6조)제2항 중 “전문인”을 “전문가”로 한다.

안 제8조(종전의 제7조)의 제목 “위원의 위촉 해제”를 “위원의 해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 해제”를 “해촉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위촉 해제를”을 “해촉을”로 한다.

안 제9조(종전의 제8조)제3항 중 “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제2항의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”을 “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”으로 한다.

안 제10조의 제목 “수당과 여비”를 “수당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준용규정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	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작하는 간행물 또는 홍보물의 편집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신 설>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서울의회”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의정활동 소개,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소식지를 말한다. 2. “영상홍보물”이란 의회 영상광고, 전광판용 영상물 및 그 밖에 홍보영상을 말한다.
제2조(편집위원회의 설치) 서울특	제3조(편집위원회의 설치) 의회가

별시의회에서 제작하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작・배포하는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의회 편집위원회--------- ---------- -.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(생 략) 2. 게재 원고 및 편집시안 심의에 관한 사항 3. 대시민 영상홍보물 심의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편집과 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제4조(기능) ---------- ----------. 1. (원안과 같음) 2. 서울의회 게재 -- 편집시안---------- 3. ---------- 제작---------- 4. 그 밖에 위원장이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4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6명, 언론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인 4명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며,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	제5조(구성) ① (원안과 같음) ② ----- 의원 중에서 6명 이내---------- ---------- 전문가 4명 이내의 범위에서 ---------- ---------- -----. ③ ----------

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인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	---------- 전문가 ----------.
<신 설>	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.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	제6조(임기) ① ----------. 다만, 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원안과 같음)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생략)	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원안과 같음)
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장과 외부 전문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---------- 전문가 ----------.
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	제8조(위원의 해촉) ---------- 해촉----------.
1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	1. ---------- 해촉을 -----

희망한 경우	--------
2. ~ 7. (생 략)	2. ~ 7. (원안과 같음)
제8조(회의) ①·② (생 략)	제9조(회의) ①·② (원안과 같음)
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제2항의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	③ ------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----------.
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	<삭 제>
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홍보담당사무관이 되고, 서기는 의회사무처 홍보담당주무관이 된다.	
제10조(수당과 여비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0조(수당 등) ---------- ---------- 범위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.
<신 설>	제11조(준용규정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제11조(생 략)	제12조(원안 제11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서울의회”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의정활동 소개,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소식지를 말한다.
2. “영상홍보물”이란 의회 영상광고, 전광판용 영상물 및 그 밖에 홍보영상을 말한다.

제3조(편집위원회의 설치) 의회가 제작·배포하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서울의회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서울의회 게재 원고 및 편집시안에 관한 사항
3.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

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의원 중에서 6명 이내, 언론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4명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며,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.
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
2.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
3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4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5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6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
7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(준용규정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